

## 제 4 장 원산지 규칙

### 제 4.1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관세가격**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가. 관세평가협정 제1조의 원칙에 따라, 관세평가협정 제8조에 따라 조정된, 상품 판매자의 거래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상품이나 재료의 가격. 또는
- 나. 그러한 가격이 없거나 그러한 상품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관세평가협정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

**F.O.B.**라 함은 운송수단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 상품이 수출된 때에 경감·면제 또는 환급된 내국소비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할 상품의 본선 인도 가격을 말한다.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라 함은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이나 재료를 말한다.

**상품**이라 함은 모든 제품·생산품·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가.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채취된 광물
- 나.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재배되고 수확, 채취되거나 또는 채집된 식물 및 식물생산품
- 다.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출생 및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라.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수렵 또는 낚시양으로 획득된 상품
- 마.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해의 외측 기선 안에서의 어업으로부터 획득된 상품

- 바.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해 밖의 바다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생산품
- 사. 가공선박 안에서 보호에 규정된 상품으로부터 생산된 상품. 다만, 그러한 가공선박은 양 당사국 중 일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 아. 영해 밖의 해저로부터 또는 해저 하부에서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채취된 상품. 다만, 당사국은 그러한 해저를 탐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자.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다만, 이 상품은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획득되고 비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가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차.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 (1)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생산, 또는
  - (2)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 카. 모든 생산단계에서, 전적으로 가호 내지 차호에 규정된 상품 또는 그 파생품으로부터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생산된 상품

**중간재**라 함은 자체 생산되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재료를 말한다.

**재료**라 함은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며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된 상품을 말한다.

**비원산지상품 또는 비원산지재료**라 함은 이 장에 따라 원산지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원산지재료**라 함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재료를 말한다.

**선적을 위한 포장재 및 용기**라 함은 개별적 판매를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 또는 재료와는 구별되는, 운송 기간 동안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을 말한다.

**생산자**라 함은 상품을 재배·채굴·사육·수확·어로·재생산 및 번식·덧사냥·수렵·제조·가공·조립 또는 분해하는 인을 말한다.

**생산**이라 함은 상품의 재배·사육·채굴·수확·어로·재생산 및 번식·덧사냥·수렵·제조·가공·조립 또는 분해를 포함하여 상품을 획득하는 방법을 말한다.

**사용된**이라 함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거나 소비된을 말한다. 그리고

**재료의 가격**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선적을 위한 포장재 및 용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의 역내가치포함 비율의 산출 및 최소허용기준의 적용 목적상, 상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가격은,

(1)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수입된 재료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수입과 관련하여 생산자의 소재지로 국제운송하는데 발생한 화물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 재료의 관세가격이 된다.

(2) 상품이 생산된 영역에서 구입한 재료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면, 생산자의 소재지로 재료를 운송하는 화물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생산자가 그 재료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이 된다. 그리고

(3) 중간재의 경우에는 다음을 합산하여 결정된다.

(가) 일반경비를 포함하여 재료의 생산시 발생한 모든 비용. 그리고

(나) 이윤

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의 경우에는 다음 경비를 그 재료의 가격에서 차감할 수 있다.

(1) 지불되었거나 지불될 관세 또는 조세에 대한 공제를 포함하여, 면제 또는 환급되었거나 환급 또는 달리 회수될 수 있는 관세 및 조세를 제외하고,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지불한 재료에 대한 관세, 조세 및 통관 중개수수료

(2) 국내 생산자에게 재료를 운송하는데 발생한 국내운송비용

- (3)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과 무용물의 비용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스러기나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그리고
- (4)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비용

#### **제 4.2 조**

##### **원산지 상품**

1. 이 협정의 목적상, 원산지 상품은 다음의 상품을 말한다.
  - 가.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나.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만 전적으로 이루어진 생산의 결과로서, 이 장에 따라 그 밖의 적용 가능한 요건 및 부속서 4A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상품
  - 다.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서 달리 규정된 상품. 또는
  - 라. 이 장에 따른 원산지 재료만으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만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
  
2. 사용된 재료에 대하여 세번변경 또는 특정제조나 가공공정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 품목별 규칙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된다.

#### **제 4.3 조**

##### **특정 상품의 취급**

1. 부속서 4B에 열거된 상품이 대한민국의 영역으로부터 싱가포르의 영역으로 수입될 때 그 상품은 원산지상품이 된다. 그 상품은 이 장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또한 원산지재료가 된다.
  
2.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이 조 및 부속서 4B의 운용 또는 개정에 대하여 협의한다.

## 제 4.4 조 역외가공

1. 제4.2조의 관련 규정 및 부속서 4A에 규정된 품목별 요건에 불구하고, 부속서 4C에 열거된 상품은 당사국에서 수출된 재료가 그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생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친 후 다시 그 당사국으로 재수입된 경우라도 다음에 부합할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본다.

- 가. 제2항에 규정된 대로 비원산지 투입의 총가치가, 원산지 지위가 신청된 완제품의 관세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 나. 원산지재료의 가치가, 원산지 지위가 신청된 완제품의 관세가격의 45퍼센트 이상이고,
- 다.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재료가, 그 당사국의 영역 밖으로 수출되기 전에 당사국에서 완전히 획득 또는 생산 되거나 제4.16조의 불인정 공정을 넘어서는 생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치고,
- 라. 수출된 재료의 생산자와 원산지 지위가 신청된 완제품의 생산자가 동일하고,
- 마. 재수입된 상품이 수출된 재료의 생산 또는 가공 공정을 통하여 획득되고, 그리고
- 바. 생산 또는 가공<sup>4-1)</sup>의 최종 공정이 당사국의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경우

2. 제1항가호의 목적상, 비원산지 투입의 총가치는,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된 모든 재료의 가치와 운송비를 포함하여 축적된 그 밖의 모든 비용 뿐만 아니라, 당사국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이다.

## 제 4.5 조 역내가치포함 비율

1.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원산지상품을 판정하는 데에 요구되는 때에는, 상품의 역내가치포함 비율은 다음의 방식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4-1) 생산 또는 가공의 최종공정은 제4.16조에 규정된 불인정공정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RVC = \frac{CV-VNM}{CV} \times 100$$

여기서,

RVC는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 비율이다.

CV는 F.O.B.가격에 기초하여 조정된 관세가격이다.

VNM은 생산자에 의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이다.

#### **제 4.6 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품**

조립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분해된 형태로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일반해석규칙 제2(a)항의 규정에 따라 조립 상품으로 분류되는 상품은 제4.2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간주한다.

#### **제 4.7 조 중간재**

상품의 생산자는 제4.5조에 따른 역내가치포함 비율의 산정의 목적상 그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자체 생산 재료를 중간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중간재가 역내가치포함 비율 요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중간재 생산에 사용된, 역내가치포함 비율 요건의 적용을 받는 그 밖의 자체 생산 재료는 그 자체로는 생산자에 의하여 중간재로 지정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 4.8 조 증립요소**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결합되지 아니하는 다음 요소의 원산지를 판정할 필요는 없다.

- 가. 연료 및 에너지
- 나. 도구·형판 및 주형

- 다.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재료
- 라.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작동에 사용되는 윤활제·그리스·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 마. 장갑·안경·신발·의류·안전 설비 및 보급품
- 바.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장치 및 보급품. 그리고
- 사. 상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상품

#### **제 4.9 조 누적계산**

1. 일방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가 타방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상품의 생산에 결합되는 경우, 그 재료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이 원산지인 것으로 간주된다.
  
2. 상품의 원산지 판정의 목적상, 상품의 생산자는 당해 상품의 생산에 결합된 재료에 대한 자신의 생산을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의 생산에 누적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재료의 생산은 그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상품이 제4.2조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어야 한다.

#### **제 4.10 조 최소허용수준**

1. 부속서 4A에 따라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된다.
  - 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필요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관세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 나. 그 상품이 원산지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이 장에 규정된 그 밖의 모든 다른 적용 가능한 기준을 충족할 것
 그러나, 그러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는 그 상품에 대한 모든 적용 가능한 역내가

치포함 비율 요건을 위하여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에 포함된다.

2. 제1항의 규정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1류 내지 제14류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 그리고

나. 비원산지재료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판정을 받고 있는 상품의 소호와 다른 소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15류 내지 제24류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

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50류 내지 제63류에 규정된 상품 중 상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그 상품의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되는 특정 섬유 또는 방사가 부속서 4A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산지 제품이 아니라고 판정되는 경우에도, 그 구성요소에서 차지하는 모든 섬유나 방사의 총 무게의 비율이 그 구성요소의 총 무게의 8퍼센트 이하일 경우에는 원산지로 간주된다.

#### **제 4.11 조**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

1.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가 원산지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각 상품 또는 재료의 물리적 분리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또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거나 또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 의하여 달리 인정되는 평균·후입선출법 또는 선입선출법과 같은 재고관리기법의 사용을 통하여 판정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재고관리기법이 선택되면, 그 기법은 그 재고관리기법을 선택한 인의 전체 회계년도 동안 그러한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계속 사용된다.

#### **제 4.12 조**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

1. 다음의 조건 하에, 상품의 표준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상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그 상품이 원산지상품이라면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가 부속서 4A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는지를 판정하는데 있어서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가.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에 대한 송장이 그 상품과 별도로 발부되지 아니할 것. 그리고

나.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도구의 양과 가치가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 수준일 것

2.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 비율 요건의 대상이 될 경우,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 비율 산정에 있어서 사안에 따라 원산지재료 또는 비원산지재료로 고려된다.

#### **제 4.13 조**

#####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상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된다면 그 상품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가 부속서 4A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졌는지를 판정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하며,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 비율 요건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포장재료와 용기의 가치가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 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사안에 따라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 **제 4.14 조**

#####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수송을 위하여 상품을 포장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다음을 판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한다.

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가 부속서 4A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그리고

나.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 비율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 제 4.15 조 직접운송

상품이 제4.2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생산된 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상품은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가. 상품이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직접 운송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 나. 상품이 이 협정상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되거나 환적된 경우 수입자가 제5.9조다호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제 4.16 조 불인정 공정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 일정한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친다는 이유만으로 제4.2조의 원산지상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아니한다.

- 가. (건조·냉동·염수장 보관과 같이) 운송 및 저장 기간 동안 양호한 상태로 상품을 보존시키기 위한 작업과 그 밖의 유사한 작업
- 나. 포장의 변경 및 포장상태의 해체 및 조립
- 다. 제품 또는 그 포장의 의장·상표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 부착
- 라. 분해
- 마. 시험 또는 측정
- 바. 병·통·상자에 넣기 및 그 밖의 간단한 포장 작업
- 사. 탈피·탈각 또는 박편·탈곡·뼈제거·분쇄 또는 압착 및 연질화를 포함한 단순 절단
- 아. 단순 혼합
- 자. 완전한 제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 조립
- 차. 단순한 물품의 세트 구성
- 카. 동물의 도살
- 타. 품질 검사 또는 분쇄

파. 부서지거나 파손된 부분으로부터 먼지 제거, 녹방지를 위한 기름칠,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보호 재료의 도포  
하. 염화 또는 가당  
거. 물 또는 그 밖의 수성·이온·염화 용액에 의한 희석  
너. 대량 선적의 분류. 그리고  
더. 상기 가호 내지 너호까지 규정된 둘 이상의 작업의 조합  
비원산지재료가 그러한 작업에 사용될 때 그러한 작업은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수행된다.

#### **제 4.17 조 해석과 적용**

이 장의 목적상,

- 가. 이 장의 세번분류의 기초는 2002년 1월 1일에 개정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다.
- 나. 이 장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관세평가협정을 적용하는 경우,
  - (1) 관세평가협정의 원칙은 상황이 요구하는 적절한 수정을 통하여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것처럼 국내거래에도 적용된다.
  - (2) 이 장의 규정은 관세평가협정과 상이한 범위 안에서 그 협정에 우선한다. 그리고
  - (3) 제4.1조의 정의는 관세평가협정상 정의와 상이한 범위 안에서 그 협정의 정의에 우선한다.
- 다. 이 장에 규정된 모든 비용은 상품이 생산된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적용 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된다.

#### **제 4.18 조 협의 및 수정**

1. 양 당사국은 이 장이 효과적이고 통일적인 방식으로 적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협의하며 협력한다.

2. 양 당사국은 기술·생산공정 및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개정권고를 포함한 그 밖의 관련 사안의 발전을 고려하여, 제22.1조에 규정된 대로 원산지 규칙을 검토하고 이 장 및 그 부속서에 대한 필요한 개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협의한다.